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혜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.

발 의 자 : 정혜경 · 윤종오 · 전종덕
손 술 · 최혁진 · 민병덕
서미화 · 이주희 · 용혜인
김준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·18민주유공자, 고령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장애인,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.

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고,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「근로기준법」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,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.

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

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,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의2 삭제).

법률 제 호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58조의2(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)</u> <u>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(산업 · 연구, 관광 · 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1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 2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	<u><삭 제></u>

4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9조

5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

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

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